연 구 관 리 규 정

목 차

제	1장 총칙	• 1
	제1조 목적	···· 1
	제2조 정의	···· 1
	제3조 적용범위	···· 1
제	2장 연구과제 선정위원회	··· 1
Ä	세1절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구성	···· 1
,	제4조 연구과제 선정위원회	···· 2
į	제5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	···· 2
	제6조 선정위원회 개최의 시기	···· 3
į	제7조 비밀의 엄수 및 직무상 이용 금지	···· 3
À	세2절 운영기준 및 과제 선정	··· 3
	제8조 연구과제 제안	···· 2
	제9조 심의 및 의결	···· 3
į	제10조 심의자료	···· 4
,	제11조 심의결과 처리	···· 4
제	3장 연구의 수행 및 점검	··· 4
	제12조 연구책임자	···· 4
	제13조 연구과제의 점검	···· 4
į	제14조 실행예산의 편성	···· 4
	제15조 연구비의 정산	···· 5
제	4장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	···· 5
ズ	세1절 평가위원회 구성	··· 5
	제16조 연구결과 평가위원회	···· 5

부 칙		7
제23조	연구 결과의 공시	7
제22조	연구의 종료 및 연기	7
제21조	연구 결과의 활용	7
제20조	연구 결과의 평가	6
제2절	평가기준 및 활용	6
제19조	비밀의엄수 및 직무상 이용금지	6
제18조	위원회 개최의 시기	6
제17조	.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	5

연구관리규정

2019.10.28 제정(규정 제1245호) 2025.03.26. 일부개정(규정 제1505호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정책·학술에 관한 연구의 효과적인 추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업무의 관리,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연구책임자"란 연구과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연구를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연구용역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.
- 2. "연구 담당 부서장"이란 연구과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<개정 2025.03.26.>
-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대외전문가 또는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정책·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정부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「용역업무 수탁에 관한 세칙」을 준용하여 실시한다.
 - ②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별도의 규정으로 위임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기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
 - 2 수탁연구의 재용역으로 진행되는 연구
 - 3. 정부 등으로부터 요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
 - 4. 연간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 사업내용이 정해진 연구
 - 5.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내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

<개정 2025.03.26.>

④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장 연구과제 선정위원회

제1절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구성

- 제4조(연구과제 선정위원회)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5.03.26.>
 - 1. 연구과제 적절성 검토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연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며 5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해당 본부의 실장급으로 하고, 필요 시 실 단위 선임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 - ③ 간사는 연구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, 선정위원회의 진행과 제반 자료의 준비를 총괄한다. <개정 2025.03.26.>
 - ④ 위촉위원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내부전문가를 구성하되,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,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. <신설 2025.03.26.>
 - 1.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(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) 공무원
 - 2.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
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에 근무 중인 교수.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
 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 - 가. 해당 직무 관련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나. 해당 직무 관련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 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
 - 다. 해당 직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라. 해당 직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
 -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는 위원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<개정 2025.03.26.>
 - ⑥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3.26.>
 - ⑦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,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심의 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. <신설 03.26.>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 - 3. 그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⑧ 심의대상자는 제7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고,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못한다. <신설 2025.03.26.>
- ⑨ 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03.26.>
- 제6조(선정위원회 개최의 시기)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차년도 연구 과제 선정을 위해 전년도 예산 심의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추진하는 연구의 특성에 따라 해당연도 초에 개최할 수 있다.
- 제7조(비밀의 엄수 및 직무상 이용 금지) 선정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,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비밀 등이용 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03.26.>

제2절 운영기준 및 과제 선정

- 제8조(연구과제 제안) ① 연구를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제안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3.26.>
 -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 - 2. 다른 유사 연구와의 중복 여부 및 차별성 검토(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 활용)
 - 3. 연구의 예산규모, 수행기간 및 연구내용
 - 4.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 - 5. 그 밖에 연구의 수행에 관한 사항
 -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를 선정한다.
 - 1. 연구과제의 적정성
 - 2. 연구의 예산규모, 수행기간 및 추진방식의 적정성
 - 3.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 및 활용 방안의 명확성
 - 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
[제7조에서 이동 <2025.3.26.>]

- 제9조(심의 및 의결) ① 선정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과 위원 5인 이상의 토론 및 결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.
 - ② 위원회의 사안결정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견서를 기준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<2025.3.26.>]

제10조(심의자료) 연구책임자는 회의개최 1주전까지 간사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간사는 즉시 이를 위원 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<2025.3.26.>]

- 제11조(심의결과 처리) ① 간사는 회의 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를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<2025.3.26.>]

제3장 연구의 수행 및 점검

- 제12조(연구책임자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연구의 개요, 주요 결과, 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계획 등을 포함한 연구완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연구책임자는 사업기간 중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

[제11조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<2025.3.26.>]

제13조(연구과제의 점검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기본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행상황을 수시로 중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연구가 중간까지 진행되었을 때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 과제 성격과 예산 규모에 따라 연구 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다. ② 연구 담당 부서의 장은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외부연구자(용역 연구책임자)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. 이 경우 내부연구자는 해당 외부연구자에게 방문목적, 방문일시,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연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외부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[제12조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<2025.3.26.>]

제14조(실행예산의 편성)

-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실행예산안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실행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연구과 제 실행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직접경비 및 제경비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, 별표 1에 없는 항목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거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5.03.26.>
- 제15조(연구비의 정산) 연구 수행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정산은 공단 「예산회계규정」 및 「계약사무처리세칙」을 따른다. <개정 2025.03.26.>
 [제13조에서 이동,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<2025.3.26.>]

제4장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

제1절 평가위원회 구성

- 제16조(연구결과 평가위원회)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·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평가위원회(이하"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연구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제1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<2025.3.26.>]

- 제17조(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며 5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해당 본부의 실장급으로 하고, 필요 시 위원중 호선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3.26.>
 - ③ 간사는 연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, 평가위원회의 진행과 제반 자료의 준비를 총괄한다. <개정 2025.03.26.>
 - ④ 위촉위원은 3급 이상 직원의 내부전문가 3명과 외부전문가 최소 2명 이상으로 지정하

- 며,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. <개정 2025.03.26.>
- 1.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(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) 공무원
- 2.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
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에 근무 중인 교수.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
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- 가. 해당 직무 관련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나. 해당 직무 관련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 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
- 다. 해당 직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라. 해당 직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
-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는 위원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<개정 2025.03.26.>
- ⑥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「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3.26.>
- ⑦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제척되며, 별지 제1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. <신설 2025.03.26.>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- 3. 그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⑧ 평가대상자는 제7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고,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해당 평가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못한다. <신설 2025.03.26.>
- ⑨ 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03.26.>
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<2025.3.26.>]

제18조(위원회 개최의 시기) 연구 담당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 완료 이전에 연구결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최종보고회 개최 시 평가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3.26.>

[제16조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<2025.3.26.>]

제19조(비밀의 엄수 및 직무상 이용 금지) 평가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

여야 하고,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. <센설 2025.03.26 >

[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<2025.3.26.>]

제2절 평가기준 및 활용

- 제20조(연구 결과의 평가) ① 연구결과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의 기준을 따르며 연구방법의 적절성, 연구결과의 타당성,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. <개정 2025.03.26.>
 - 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급표에 따라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출석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점수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3.26.>
 - ③ 연구책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 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심의 받을 수 있다

[제17조에서 이동,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<2025.3.26.>]

- 제21조(연구 결과의 활용) ① 연구 담당 부서의 장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책자 발간 등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03.26.>
 -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단 그룹웨어시스템(EP)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.

[제18조에서 이동 <2025.3.26.>]

- 제22조(연구의 종료 및 연기) ① 연구업무의 종료시점은 당초 연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, 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당초 계획된 종료일까지 연구의 종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연구 담당 부서의 장은 계획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붙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5.03.26.>

[제19조에서 이동 <2025.3.26.>]

- 제23조(연구 결과의 공시) ① 공단은 연구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 스템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시 인터넷 사 이트를 말한다)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 통합공시 기준 등에 따른 공시 예외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 -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.

[제20조에서 이동 <2025.3.26.>]

부 칙 <규정 제1505호, 2025.03.26.>

이 규정은 202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연구관리규정 [별지 제1호서식](제5조제7항 관련) <개정 2025.03.26.>

공정심의(평가) 확인(신고)서

본인은 "0000 연구 0000 위원회"를 공정하게 심의(평가)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(신고)합니다.

□ 사전접촉 사실 확인(신고)서

업체명	사전접촉자	일시	세부내용

년 월 일

심의(평가)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: 성명 : (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■ 연구관리규정 [별지 제2호서식](제7조 관련) <개정 2025.03.26.>

평가위원 보안 및 청렴 서약서

본인은 00년 00월 00일 「00년 연구 0000위원회」의 0000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「00년 연구 000위원회」의 심사평가 및 참관을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
- 2. 본인은 심사 평가 및 참관을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

00 년 00월 00일

소 속:

직 위:

성 명: (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■ 연구관리규정 [별지 제3호서식](제8조제1항 관련) <개정 2025.03.26.>

연구과제 제안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연구관리부서에서 작성합니다.

접수일자		관리번호							
	부서명								
제안자	직급		성명						
 제안 과제명									
연구분야	¹⁾ 안전사업기획 (※ ¹⁾ 공단사업 기획연구(개발	,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) 배선, 그 외 사형				
과제특성	교통안전() / 모빌리티() / 자율주행() / 교통빅데이터() / 기타() ※ <u>해당분야가 없을 경우</u> 기타부문에 과제성격,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작성 ¹⁾ 단독연구() / ²⁾ 공동연구() / ³⁾ 위·수탁연구() / ⁴⁾ 기타() ※ ¹⁾ 1인 단독 연구, ²⁾ 공단내부 직원 공동연구 ³⁾ 수탁용역과제 일부 활용 또는 예산 중 일부를 외부 위탁 수행								
연구의 필요성	※ 정부시책, 공단사업과의 부합성, 대내·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, 선행 연구 등 최근 동향 등								
주요 연구내용	※ 연구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(자료 수집 방법, 연구 방법, 위탁 및 공동과제 수행 시 업무분담 방안 등 포함)								
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	※ 학술적 기여도,용 가능성 등을	예상되는 공단사Q 구체적으로 기술	d 분야 활용 기	능성, 정부 정책	백에 기여	및 활			
지원근거 및 추진경위	○ 지원근거 * 관련 법령, 공약, 시책 등을 기입 * 관련법령,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, 공약내용 등을 기술 ○ 추진경위 * 최초 시작년도, 그동안의 정책변화, 추진배경 등을 기술								
시업기간	ʻyy.mm~'yy.mm	총시업비	00백만원	중복 여부	0/X				
* 유사한	*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								
				یا	열 월	일 			
첨부서류	1. 차별성 검토 5 2. 연구 실행예산	• •							

2. 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■ 연구관리규정 [별지 제4호서식](제8조제1항 관련) <개정 2025.03.26.>

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(해당 부서→위원회)

구 분		연구과제명 (연구년도)	연구자	연구목적	주요 연구내용
	1				
서하	2				
선행	3				
연구	4				
	5				
	과제명				
	연구목적				
	연구방법				
중복성 검토	연구내용				
	선행연구와 의 차별성				
	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				

■ 연구관리규정 [별지 제5호서식](제9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5.03.26.>

연구 선정 심의 의견서

과제명	연구책임자	연구기간	연구비

심의일자 : 20 . . .

심의항목	심의결과				
п п оп	적정	부적정	비고		
○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의 적정성					
○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구체성					
○ 연구과제 예산규모 및 수행기간의 적정성					
○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의 명확성					

주문사항 주문사항			
	심의의견 및		

소속	직위(직급)	성명
		(서명)

■ 연구관리규정 [별지 제6호 서식](제14조 관련) <개정 2025.03.26.>

연구수행 실행예산 내역

	구 분	예 산	비고
	총 연 구 비		
1. 인건비			
	가. 여 비		
	나. 조사비		
	1) 조사요원활용비		
	2) 정보자료수집비		
	다. 수용비		
	1) 원고료 및 번역료		
2. 직접경비	2) 소모품비		
	3) 인쇄비		
	라. 지급수수료		
	1) 위탁용역비		
	2) 지적재산권 출원·등록비		
	3) 전산처리비		
	4) 운송료		
	가. 전문가 활용비		
3. 제경비	나. 회의비		
	다. 교통통신비		
	합 계		

주) 실행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한다.

■ 연구관리규정 [별지 제7호서식](제20조제1항 관련) <개정 2025.03.26.>

연구결과 평가서(점검표)

20 . . .

연구과제명		
연구책임자	연구진	
연구기간	연구예산(천원)	

	평가내용		최종						
명가항목			배	평가등급				의견	
0/10-1			데 점 -	매우 우수	우수	보 통	미 흡	매우 미흡	7.0
1.연구의	①기관의 설립 목적 및 사회· 정책적 요구에의 부합성		10	10	8	6	4	2	
필요성(20)	②연구주제의	시의적절성	10	10	8	6	4	2	
2.보고서 구성의	③연구주제와	내용의 부합성	5	5	4	3	2	1	
논리성(10)	④논리의 적절	성	5	5	4	3	2	1	
	⑤연구방법의	적절성	10	10	8	6	4	2	
3.연구 방법의 적절성(20)	⑥선행연구결과 및 최근 동향 의 반영도		5	5	4	3	2	1	
123(20)	①자료수집과 분석의 적절성		5	5	4	3	2	1	
4.연구결 과타당 성(5)	과타당 ⑧연구보고서의 명료성과 가독성		5	5	4	3	2	1	
	⑨학술적 기여도(10)	이론적 기여도	5	5	4	3	2	1	
		독창성 및 선도성	5	5	4	3	2	1	
5.연구결과		정책방안의 우수성	15	15	12	9	6	3	
기여도(45)	⑩정책활용 가능성(35)	정책방안 추진 방법의 구체성	10	10	8	6	4	2	
		정책방안의 실현가 능 성	10	10	8	6	4	2	
총점			100						
최종 평가의견									

평가위원:	서명 :	

평가서 결과에 따른 등급표

구 분	내 용			
구 분 평가・심의 검토의견 제시	내용 가. 평가서[점검표]에 대해서는 평가단 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"적격" 또는 "부적격"으로 구분함. S			
	있다고 평가되는 것 - D 등급: 연구가 심오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향후 활용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것 - E 등급: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활용가치가 미흡하고 대폭적인 수정·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것 나. "부적격"의 경우 내부연구자를 통해 수정하도록 지시하여 이후 결과보고서를 보완 제출하거나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음. 다. 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음.			

■ 연구관리규정 [별표1](제14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5.03.26.>

연구과제 실행예산 편성 기준

1. 인건비 : 해당 연구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위촉직 및 실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공단의 「실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」 에 따라 편성

2. 직접경비

- 가. 여비 : 국내여비, 국외여비 및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구분하여 공단 「여비규정」에 따라 편성
- 나. 조사비
- 1) 조사요원활용비 : 해당 연구과제수행에 단기간 실험참여, 공사 등을 위하여 참 여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로 공단의 「실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」에 따라 편성
- 2) 정보자료수집비 : 연구자료를 수집 및 구입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적용
- 다. 수용비 및 수수료
- 1) 원고료 및 번역료 : 공단의 「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」에 따라 편성
- 2) 소모품비(유인물비, 사무용품, 복사용지, 재료구입비 등) : 실소요액 적용
- 3) 인쇄비(보고서, 조사표 등 연구 관련자료 인쇄 '복사료 등) : 실 소요경비 적용라. 지급수수료
- 1) 위탁용역비 :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현장조사 · 실시설계 등 기술용역 및 연구용 역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「계약사무처리세칙」에 따라 편성
- 2) 지적재산권 출원 · 등록비 : 지적재산권의 출원 · 등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적용
- 3) 전산처리비 : 컴퓨터 사용료, 하드웨어(H/W) · 소프트웨어(S/W) · 재료 및 부대작 업 비용 등으로 실 소요경비 적용
- 4) 운송료 : 시험자동차, 실험장비 등의 운송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적용

3. 제경비

- 가. 전문가 활용비 :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회의, 발표, 강의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공단의 「강사료등제수당지 급세칙」 및 「여비규정」에 따라 편성
- 나. 회의비 :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편성
- 다. 통신비 :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편성